

【 1 】 第39回議會(臨時會)會期決定의件

제 의 년 월 일 : 1995. 8. 18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39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· 회 기 : 1995. 8. 23 (1일간)

【 2 】 1994會計年度決算檢查委員選任의 件

제 의 년 월 일 : 1995. 8. 17

발 의 자 : 이홍규의원외 2인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주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항 양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양주군의 199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1. 선임위원수 : 3인

2. 선임위원 - 대표위원 : 홍재룡 의원

- 위원 : 한상원 세무사, 임갑주 (전직 공무원)

3. 위촉기간 : 95. 8. 24 - 9. 12 (20일간)

【 3 】 楊州郡農工技術訓練所條例中改正條例案

제출년월일 : 1995. 8. 10

제출자 : 양주군수

□ 제안이유

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이전에 따라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농공기술훈련소의 소재지를  
양주군 광적면 광석리로 하고 훈련소 업무중 일부를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코  
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제2조(위치)중 “의정부시 호원동에 둔다”를 “양주군 광적면 광석리에 둔다”로  
함. (안 제2조)

7

나. 제3조(업무)중 제1호,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함.

1. “새마을 영농기술자 육성 및 작목별 과제훈련”을 “농민학습 단체 육성 및  
영농기술보급”으로 함. (안 제3조 제1호)

2. “영농후계자 육성 및 작목별 과제훈련”을 “작목별 과제훈련”으로 함.

(안 제3조 제2호)